

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3. .
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법」의 분법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세 3법이 일부 개정되어,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함(안 제47조제1항)

3. 근거법규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조, 제140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1. 3. 7. ~ 3. 27.(의견 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법 제140조”를 “법 제140조제2항”으로, “1억원 이상”을 각각 “3천만원 이상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7조(고액 · 상습체납자 명단공개)</p> <p>① 구청장은 <u>법 제140조</u>에 따른 지방세 <u>1억원 이상</u> 고액 · 상습체납자(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<u>1억원 이상인</u> 자를 말한다)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47조(고액 · 상습체납자 명단공개)</p> <p>①-----<u>법 제140조제2항</u>----- <u>3천만원 이상</u> ----- -----<u>3천만원 이상</u>----- ----- -----. ②(현행과 같음)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816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1. 3. 30(수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3. 30(수)
- 라. 위원회 상정 : 2011. 4. 8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윤병진 총무국장)

-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공개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,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함(안 제47조제1항)

5. 관련법규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

6. 검토의견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